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태국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OCPB(소비자보호청)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가능한 경우,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를 표시해야 한다.

WTO/TBT 질의처 및 통보 기관
TISI(태국 산업표준연구소), 산업부
전화: (662) 430 6831 내선번호: 2130
팩스: (662) 354 3041
이메일: thaitbt@tisi.mail.go.th
웹사이트: <https://www.tisi.go.th>

3. **조항 2.9.2 [X], 2.10.1 [], 5.6.2 [], 5.7.1 [], 3.2 [], 7.2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자동차 및 전기차

5. **제목(페이지수, 언어):** 자동차 및 전기차의 라벨 규제 제품 지정 결정에 대한 라벨 위원회의 통보 초안(3페이지, 태국어)

6. **내용:** 이 통보 초안은 자동차 및 전기차 제품을 라벨 규제 제품으로 규정한다.

본 통보 초안은 다음 제품에 적용된다.

1. 엔진으로 구동되는 개인 승용차 또는 개인 트럭을 의미하는 자동차. 차량법에 따라 아직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의미한다.

2. 전기차는 전기 또는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구동되는 개인 승용차 또는 개인 트럭으로서 아직 차량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의미한다.

라벨 규제 제품의 라벨에는 제품의 본질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문구, 그림, 인공 디자인 또는 이미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함께 제공되는 외국어로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잘 보이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이 라벨 규제 제품의 라벨은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용으로 제조된 라벨 규제 제품의 라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

8.	관련 문서: 소비자 보호법 1979(B.E.2522) 및 해당 개정안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10.	의견 마감일: 통보일로부터 30일
11.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 국가 질의처[] 또는 주소, 전화와 팩스 번호,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 해당할 경우, 다른 기관: WTO/TBT 질의처 및 통보 기관 TISI(태국 산업표준연구소), 산업부 전화: (662) 430 6831 내선번호: 2130 팩스: (662) 354 3041 이메일: thaitbt@tisi.mail.go.th 웹사이트: https://www.tisi.go.th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THA/25_02628_00_x.pdf